투자금반환

[대구지방법원 2014. 9. 4. 2013가합10141]



【전문】

【원 고】

【피 고】 주식회사 대구은행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)

【변론종결】2014. 8. 12.

【주문】

]

- 1.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피고는 원고 1에게 384,630,658원, 원고 2에게 307,704,536원, 원고 3, 원고 4에게 각 230,778,4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. 3. 23.부터 2013. 10. 3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 중 45%는 원고들이, 나머지 55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- 4.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】주위적 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78,712,850원, 원고 2에게 금542,970,289원, 원고 3, 원고 4에게 각 407,227,7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2. 15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.예비적 청구취지: 주문 제2항과 같다.

【청구취지】주위적 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78,712,850원, 원고 2에게 금542,970,289원, 원고 3, 원고 4에게 각 407,227,7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2. 15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.예비적 청구취지: 주문 제2항과 같다.

【이유】

】1. 기초사실

가,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소외 2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성서공단에서 '〇〇〇〇'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.
- 2) 원고 1은 소외 2의 자형, 원고 2는 소외 2의 처, 원고 3, 원고 4는 소외 2의 자녀들이다.
- 3)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,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1967. 9. 29. 설립된 은행으로, 원고들과 아래 나. 및 다. 항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.
 - 나.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 권유
- 1) 소외 2는 2001년경 피고의 3공단지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소외 1 등의 권유로 피고가 모집하는 펀드상품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입하는 등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.
- 2) 소외 1은 2008. 3. 중순경 피고의 황금PB(Private Banking)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2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인 "PLUS 맞춤신탁상품(이하 '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'이라 한다)"의 가입을 권유하였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

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

- 1) 소외 1은 2008. 3. 19. 소외 2 운영의 '○○○○' 사무실로 찾아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① 거래신청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), ②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, ③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(갑 제6호증), ④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설명서(갑 제7호증)을 제시하였다.
- 2)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

위탁자 각 원고(이하 '갑'이라 함)와 수탁자 피고(이하 '을'이라 함)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신탁의 목적)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.

제3조(신탁기간)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2008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.

신탁원본 교부일: 2009년 3월23일 제4조(수익자)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신탁원본의 수익자: 각 원고 신탁이익의 수익자: 각 원고 제5조(신탁재산의 운용) ① 갑은 신탁금을

【이유】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소외 2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성서공단에서 '〇〇〇〇'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.
- 2) 원고 1은 소외 2의 자형, 원고 2는 소외 2의 처, 원고 3, 원고 4는 소외 2의 자녀들이다.
- 3)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,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1967. 9. 29. 설립된 은행으로, 원고들과 아래 나. 및 다. 항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.
 - 나.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 권유
- 1) 소외 2는 2001년경 피고의 3공단지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소외 1 등의 권유로 피고가 모집하는 펀드상품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입하는 등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.
- 2) 소외 1은 2008. 3. 중순경 피고의 황금PB(Private Banking)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2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인 "PLUS 맞춤신탁상품(이하 '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'이라 한다)"의 가입을 권유하였다.

다.

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

1) 소외 1은 2008. 3. 19. 소외 2 운영의 '○○○○' 사무실로 찾아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① 거래신청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), ②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, ③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(갑 제6호증), ④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설명서(갑 제7호증)을 제시하였다.

- 2)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

위탁자 각 원고(이하 '갑'이라 함)와 수탁자 피고(이하 '을'이라 함)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신탁의 목적)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.

제3조(신탁기간)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2008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.

신탁원본 교부일: 2009년 3월23일 제4조(수익자)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신탁원본의 수익자: 각 원고 신탁이익의 수익자: 각 원고 제5조(신탁재산의 운용) ① 갑은 신탁금을

[이유]

1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소외 2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성서공단에서 '〇〇〇〇'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.
- 2) 원고 1은 소외 2의 자형, 원고 2는 소외 2의 처, 원고 3, 원고 4는 소외 2의 자녀들이다.
- 3)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,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1967. 9. 29. 설립된 은행으로, 원고들과 아래 나. 및 다. 항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.
 - 나.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 권유
- 1) 소외 2는 2001년경 피고의 3공단지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소외 1 등의 권유로 피고가 모집하는 펀드상품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입하는 등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.
- 2) 소외 1은 2008. 3. 중순경 피고의 황금PB(Private Banking)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2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인 "PLUS 맞춤신탁상품(이하 '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'이라 한다)"의 가입을 권유하였다.

다.

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

- 1) 소외 1은 2008. 3. 19. 소외 2 운영의 '○○○○' 사무실로 찾아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① 거래신청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), ②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, ③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(갑 제6호증), ④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설명서(갑 제7호증)을 제시하였다.
- 2)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

위탁자 각 원고(이하 '갑'이라 함)와 수탁자 피고(이하 '을'이라 함)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(신탁의 목적)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조(신탁기간)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2008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.

신탁원본 교부일: 2009년 3월23일 제4조(수익자)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신탁원본의 수익자: 각 원고 신탁이익의 수익자: 각 원고 제5조(신탁재산의 운용) ① 갑은 신탁금을

[이유]

】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소외 2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성서공단에서 '〇〇〇〇'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.
- 2) 원고 1은 소외 2의 자형, 원고 2는 소외 2의 처, 원고 3, 원고 4는 소외 2의 자녀들이다.
- 3)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,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1967. 9. 29. 설립된 은행으로, 원고들과 아래 나. 및 다. 항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.
 - 나.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 권유
- 1) 소외 2는 2001년경 피고의 3공단지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소외 1 등의 권유로 피고가 모집하는 펀드상품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입하는 등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.
- 2) 소외 1은 2008. 3. 중순경 피고의 황금PB(Private Banking)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2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인 "PLUS 맞춤신탁상품(이하 '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'이라 한다)"의 가입을 권유하였다.

다.

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

- 1) 소외 1은 2008. 3. 19. 소외 2 운영의 '○○○○' 사무실로 찾아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① 거래신청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), ②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, ③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(갑 제6호증), ④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설명서(갑 제7호증)을 제시하였다.
- 2)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

위탁자 각 원고(이하 '갑'이라 함)와 수탁자 피고(이하 '을'이라 함)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신탁의 목적)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.

제3조(신탁기간)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2008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.

신탁원본 교부일: 2009년 3월23일 제4조(수익자)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신탁원본의 수익자: 각 원고 신탁이익의 수익자: 각 원고 제5조(신탁재산의 운용) ① 갑은 신탁금을

【이유】

】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소외 2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성서공단에서 '〇〇〇〇'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.
- 2) 원고 1은 소외 2의 자형, 원고 2는 소외 2의 처, 원고 3, 원고 4는 소외 2의 자녀들이다.
- 3)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,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1967. 9. 29. 설립된 은행으로, 원고들과 아래 나. 및 다. 항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.
 - 나.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 권유
- 1) 소외 2는 2001년경 피고의 3공단지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소외 1 등의 권유로 피고가 모집하는 펀드상품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입하는 등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.
- 2) 소외 1은 2008. 3. 중순경 피고의 황금PB(Private Banking)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2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인 "PLUS 맞춤신탁상품(이하 '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'이라 한다)"의 가입을 권유하였다.

다.

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

- 1) 소외 1은 2008. 3. 19. 소외 2 운영의 '〇〇〇〇' 사무실로 찾아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① 거래신청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), ②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, ③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(갑 제6호증), ④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설명서(갑 제7호증)을 제시하였다.
- 2)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△△△△리조트 인수금융 참여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특정금전신탁계약서(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2)

위탁자 각 원고(이하 '갑'이라 함)와 수탁자 피고(이하 '을'이라 함)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신탁의 목적)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.

제3조(신탁기간)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2008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.

신탁원본 교부일: 2009년 3월23일 제4조(수익자)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신탁원본의 수익자: 각 원고 신탁이익의 수익자: 각 원고 제5조(신탁재산의 운용) ① 갑은 신탁금을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